

수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54387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C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강창재

변론 종결 2019. 5. 2.

판결 선고 2019. 7.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7. 2. 13. 접수 제69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7. 6. 28. 접수 제290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및 연대보증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이행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계약일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피보험자
1	2016. 4. 1	30,000,000원	2016. 4. 1.~2017. 3. 31.	F 주식회사
2	2016. 10. 20.	20,000,000원	2016. 10. 22.~2017. 10. 21.	주식회사 G

2)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H, H의 아내인 B가 A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의 대위 변제

- 1) 소외 회사는 A이 발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F, G에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7. 3. 31.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 2) 이에 A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7. 5. 30. F에 대하여 29,968,190원, 2017. 6. 16. G에 대하여 12,448,997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B의 부동산 처분 등

- 1) B는 2017. 2. 1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7. 2. 13. 접수 제694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 2) 또한, B는 2017. 6. 2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7. 6. 28. 접수 제290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B의 파산 및 원고의 소송수계

1) A은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7. 9. 6.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77504호).

2) B는 위 소송 중인 2018. 2. 5. 파산선고(수원지방법원 2017하단101041호)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원고는 2018. 5.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한다)에 따라 A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고, 2018. 10.2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2018. 10.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당시 이미 A과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따른 이행보증이 이루어져 있었고, B는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이었으므로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그리고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7. 3. 31.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A이 2017.5. 30. 대위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A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파산채권자의 채권에 해당한다.

나. 부인대상행위의 성립 여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의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포함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이라는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B는 2017. 11. 29. 파산신청을 하여 2018. 2. 5. 파산선고를 받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B는 당시 자신의 변제 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그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재산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H이 운영하던 소외 회사와 동종 업종인 우유대리점을 운영하면서, H에 게 2012. 12. 21.부터 2017. 2. 13.경까지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등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2011다566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05년경부터 B, H을 알게 되었고 2012. 12.21.경부터 지속적인 금전거래관계에 있었는데, 2016. 10.경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지않아 H에게 담보를 요구하게 되었던 점, 당시 H은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국세를 체납하는 등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었으며 2017. 2. 12. 피고에게 '사채거래를 절대 안한다. 소외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다시 돈을 차용하였던 점, B와 H은 2017. 7. 31. 소외 회사를 폐업하고 2017. 11. 29. 함께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B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의 부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경